

근로시간 실태와 정책과제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제출일: 2010. 12.

작성자: 김유선 (한국노동사회연구소 소장)

<제 목 차 례>

제1장 머리말	1
제2장 선행연구	4
제3장 주5일 근무제와 실 근로시간, 장시간 근로 실태	6
1. 주5일 근무제	6
2. 장시간 근로 실태	15
제4장 주5일 근무제 적용 결정요인(로짓분석)	19
1. 전규모 (모형1)	19
2. 30인 이상 사업장(모형2)	20
3. 30인 미만 사업장(모형3)	21
제5장 주5일 근무제가 실근로시간에 미친 영향(회귀분석)	23
제6장 장시간 근로 결정요인(다항 로짓분석)	25
제7장 맺는말	28
1. 실근로시간 단축	28
2. 주5일 근무제 적용률	29
3. 장시간 근로	31
<참고문헌>	34

<표 차례>

<표1> 인적속성별 주5일 근무제 적용률(2010년 3월, 단위:%)	8
<표2> 일자리 속성별 주5일 근무제 적용률(2010년 3월, 단위:%)	10
<표3> 산업대분류별 주5일 근무제 적용률(2010년 3월, 단위:%)	12
<표4> 인적 속성과 일자리 속성별 실 근로시간(2010년 3월 현재)	13
<표5> 인적 속성과 일자리 속성별 실 근로시간 분포	17
<표6> 주5일 근무제 적용 결정요인	20
<표7> 실 근로시간 결정요인(회귀분석, 종속변수: 근로시간 로그값)	24
<표8> 단시간과 장시간근로 결정요인(다중로짓분석, 36~48시간 기준)	26
<표9> 단시간과 장시간근로 결정요인2 (다중로짓분석, 36~52시간 기준) ...	27
<표10> 주당 실 근로시간 평균값과 분포(2010년 3월 현재)	28
<표11> 주5일 근무제 적용 현황(2010년 3월 현재, 단위: 천명,%)	30
<표12> 주요 산업의 규모별 주5일 근무제 적용률(2010년 3월, 단위:%) ...	31
<부표1> OECD 회원국 노동시간 국제비교(임금노동자, 단위: 연간노동시간)	35
<부표2> OECD 회원국 노동시간 국제비교(취업자, 단위: 연간노동시간)	36
<부표3> 사업장 규모별 실 근로시간(2010년 3월 현재)	37

<그림 차례>

<그림1> 연간 근로시간 추이	2
<그림2> OECD 국가의 연간 근로시간 비교	2
<그림3> 주5일 근무제 적용률과 실 근로시간 추이	6
<그림4> 인적 속성별 주5일 근무제 적용률(2010년 3월, 단위:%)	7
<그림5> 일자리 속성별 주5일 근무제 적용률(2010년 3월, 단위:%)	9
<그림6> 산업대분류별 주5일 근무제 적용률(2010년 3월, 단위:%)	11
<그림7> 주당 근로시간 분포(2010년 3월, 단위:%)	15
<그림8> 주5일 근무제 실시여부별 근로시간 분포(2010년 3월, 단위:%) ...	16
<그림9> 사업장 규모별 근로시간 분포(2010년 3월, 단위:%)	17

제1장 머리말

- 2003년 8월 근로기준법이 개정되고, 2004년 7월부터 주5일(40시간) 근무제가 단계적으로 도입되기 시작했음. 이에 따라 2010년 현재 주5일 근무제는 상시 20명 이상 사업 또는 사업장에 적용되고 있고, 2011년 7월부터는 5인 이상 20명 미만의 사업 또는 사업장에 확대 적용될 예정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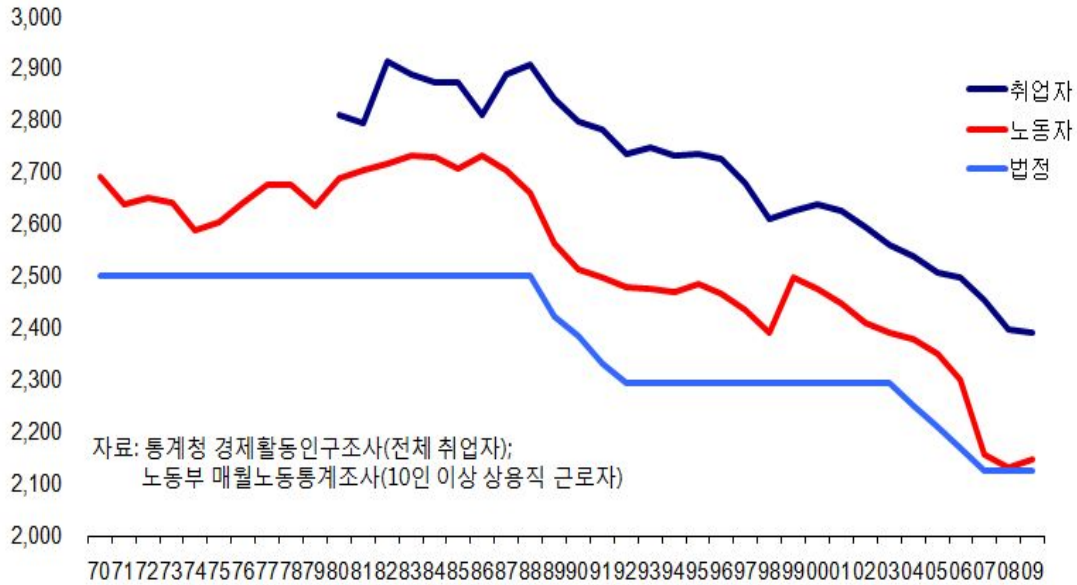
<참고> 2003년 8월 29일 근로기준법 개정, 주 44시간에서 40시간으로 단축.

- 1단계(2004년 7월 1일): 금융보험업, 정부투자기관, 지방공사 및 공단, 정부출연기관 및 단체, 상시 1천명 이상 근로자를 사용하는 사업 또는 사업장
- 2단계(2005년 7월 1일): 상시 300명 이상 1천명 미만 사업 또는 사업장
- 3단계(2006년 7월 1일): 상시 100명 이상 300명 미만 사업 또는 사업장
- 4단계(2007년 7월 1일): 상시 50명 이상 100명 미만 사업 또는 사업장
- 5단계(2008년 7월 1일): 상시 20명 이상 50명 미만 사업 또는 사업장
- 6단계(2011년 7월 1일): 상시 20명 미만 사업 또는 사업장 * 입법예고 중

- 주5일 근무제가 도입되면서 실 근로시간이 단축되고 있음. 통계청 경제활동인구조사에서 취업자 평균 근로시간은 2000년 2,637시간에서 2009년 2,392시간으로 245시간 단축되고, 노동부 매월노동통계조사(2000~6년)와 사업체근로실태조사(2007~9년)에서 10인 이상 사업체 상용직 노동자의 평균 근로시간은 2000년 2,474시간에서 2009년 2,147시간으로 327시간 단축되었음(<그림1> 참조).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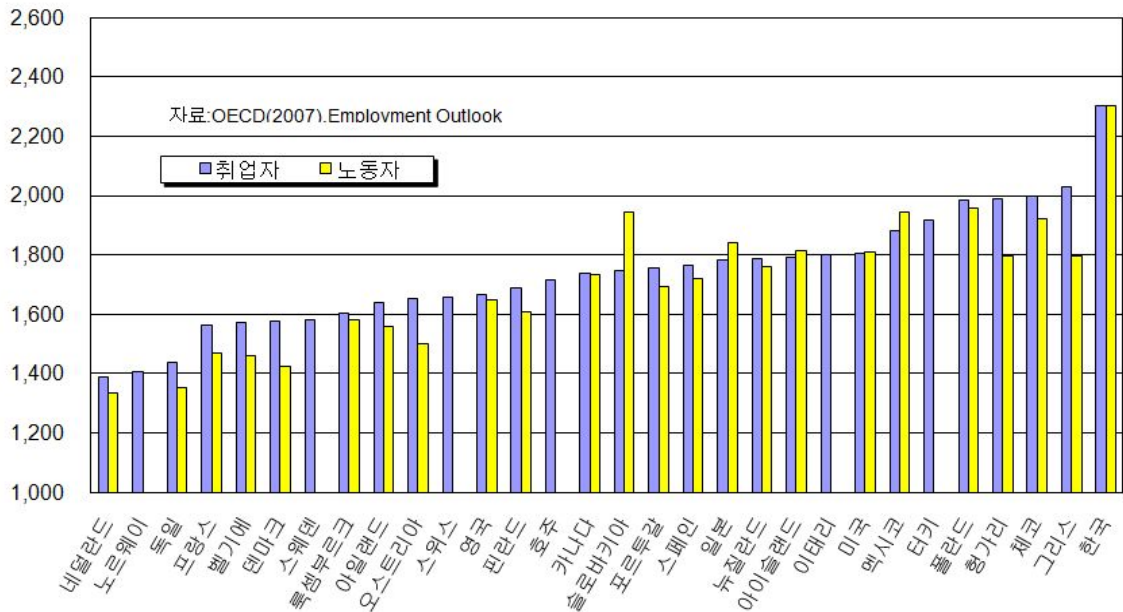
- 이러한 실 근로시간 단축은 법정 근로시간 단축과 밀접한 상관관계를 갖고 있음. 2000년부터 2009년까지 실 근로시간과 법정 근로시간의 상관계수를 계산하면, 취업자 기준으로는 0.944이고 10인 이상 사업체 상용직 기준으로는 0.955로 매우 높은 상관관계를 보이고 있음.

<그림1> 연간 근로시간 추이



○ 이처럼 법정 근로시간이 단축되고 주5일 근무제가 도입되면서 실 근로시간이 줄어들고 있음. 그러나 우리나라 노동시간이 OECD 국가 중 가장 길다는 사실은 변함이 없음(<그림2>와 <부표1,2> 참조).

<그림2> OECD 국가의 연간 근로시간 비교



- 1998년 2월부터 2003년 8월까지 5년 반 동안 주5일 근무제 도입을 둘러싸고 많은 논란이 있었음.
- 노동계는 ‘법정근로시간을 단축하면 실 근로시간이 감소해서 삶의 질이 개선되고 고용을 유지하고 확대할 수 있다’며 긍정적 효과를 강조한데 비해, 재계는 ‘법정근로시간을 단축해도 실 근로시간 단축 및 고용증가 효과는 미미하고 임금비용만 증가한다’며 부정적 효과를 강조했음.
- 그렇지만 2003년 8월 근로기준법이 개정되고 2004년 7월부터 주5일 근무제가 도입된 뒤로는, 주5일 근무제가 실제로 어떠한 영향을 미쳤는지 그 효과를 분석하고 평가한 연구는 드물음.
- 실 근로시간 단축은 삶의 질 개선과 일자리 창출을 위해 지속적으로 추진해야 할 과제임. 이 글은 주5일 근무제 도입과 실 근로시간, 장시간 근로 실태를 살펴보고, 주5일 근무제가 실 근로시간과 장시간 근로에 미친 영향을 진단함으로써, 앞으로 실 근로시간 단축을 추진함에 있어 필요한 정책적 함의를 도출할 것을 목적으로 작성되었음.
- 제2장에서는 국내에서 이루어진 선행연구를 살펴보고, 제3장에서는 주5일 근무제 도입과 실 근로시간 및 장시간 근로 실태를 살펴봄. 제4장에서는 주5일 근무제 적용 결정요인을 로짓분석하고, 제5장에서는 주5일 근무제가 실 근로시간 단축에 미친 영향을 회귀분석하며, 제6장에서는 장시간 근로 결정요인을 다항 로짓분석함. 제7장에서는 앞서 분석결과를 요약하면서 정책적 함의를 도출함.

제2장 선행연구

○ 외환위기 이후 주5일(40시간) 근무제를 둘러싼 논란이 심화되자, 2000년부터 2003년 사이는 법정 근로시간 단축이 실 근로시간 단축과 임금, 고용에 미친 영향을 분석한 연구가 다수 이루어졌음. 당시 연구는 대체로 1989~91년에 이루어진 법정 근로시간 단축이 실 근로시간 단축에 긍정적 영향을 미친 것으로 평가하고 있음.

-김유선(2000a,b)은 1970년 1사분기부터 2000년 1사분기까지 분기별 자료를 사용해서 1989~91년 법정 근로시간 단축효과를 추정했음. 실증분석 결과 법정 근로시간과 실 근로시간은 정(+)의 상관관계에 있고, 법정 근로시간을 주4시간 단축했을 때 실 근로시간은 주4.0시간(월17.2시간, 연206.3시간) 단축되었음. 그렇지만 실 근로일수는 주0.112일(월0.486일, 연5.840일)만 감소했음. 이는 주44시간과 주48시간 근무제 모두 주6일 근무제이고, 1991년부터 법정 공휴일이 축소되었기 때문임.

-안주엽·이규용(2001)은 거시노동시장 부분모형과 1985~99년 월별 자료를 사용해서, 법정 근로시간 단축이 제조업 상용직 노동자의 임금, 근로시간, 고용에 미친 영향을 추정했음. 실증분석 결과 1989~91년 법정 근로시간 단축으로 실 근로시간은 주1.9시간(3.8%) 감소했고, 고용은 4.7% 증가했으며, 시간당임금은 13.3%, 월평균임금은 10.1% 상승했다고 보고하고 있음.

-남성일(2002)은 1982년과 2000년 사이 분기별 자료와 거시경제모형을 사용해서 법정 근로시간 단축효과를 분석했음. 실증분석 결과 실 근로시간이 48시간인 상태에서 법정 근로시간을 4시간 단축하면 실 근로시간은 2.3시간 감소하고, 명목임금은 당장은 2.8%, 장기적으로는 최고 14% 상승했음. 취업률은 통계적으로 유의미하지 않은 (-)로 미약하나마 증가할 가능성이 있다고 보고하고 있음.

-신관호·신동균·유경준(2002)은 1988년과 1997년 사이 경제활동인구조사와 도시가계조사 자료를 연결해서 구축한 패널자료를 사용하여 법정 근로시간 단축효과를 추정했음. 실증분석 결과 법정 근로시간을 1% 단축하면 실 근로시간은 0.7% 감소했음. 즉 법정 근로시간을 주44시간에서 주40시간

으로 9.1% 단축하면, 주당 실 근로시간은 현행 48시간에서 6.4%(0.7×9.1) 단축된 45시간이 되고, 고용량은 4.9% 증가함.

-백웅기·오완근(2003)은 1988년 7월부터 1992년 12월까지 월별 자료를 사용해서 법정 근로시간 단축효과를 추정했음. 분석결과 법정 근로시간이 1% 단축되면 실 근로시간이 0.65% 감소하고, 실 근로시간이 1% 감소하면 취업자가 0.29% 증가함. 즉 법정 근로시간이 1% 단축되면 실 근로시간이 0.65% 감소하고 취업자는 0.19% 증가함.

o 2004년 7월부터 주5일 근무제가 도입된 이후 그 영향을 분석한 연구는 김유선(2008)의 “법정 근로시간 단축이 실근로시간, 고용, 실질임금에 미친 영향”(『산업노동연구』 14권2호)이 사실상 유일함.

-김유선(2008)은 1989~91년과 2004~7년에 이루어진 법정근로시간 단축이 실근로시간과 고용, 실질임금에 미친 영향을, 통상적인 회귀분석과 벡터오차수정 모형을 사용해서 추정했음.

-실증분석 결과 확인된 사실은 다음과 같음. 첫째, 법정 근로시간 단축으로 실 근로시간과 월 근로일수가 감소했음. 법정 근로시간을 10% 단축할 때 실 근로시간은 8.0% 감소하고 월 근로일수는 3.0% 감소했음. 둘째, 법정 근로시간 단축에 따른 실 근로시간 단축은 고용증가로 이어졌음. 근로시간을 10% 단축할 때 당장은 고용증가 폭이 미미하지만, 장기적으로 취업자는 8.5%, 노동자는 13.1% 증가했음. 셋째, 실 근로시간 단축으로 시간당 임금이 증가했음. 즉 실근로시간이 10% 단축될 때 시간당임금은 장기적으로 13.3% 증가했음. 그렇지만 월 임금총액에는 유의미한 영향을 미치지 않았음.

-이상을 요약하면 “주5일 근무제는 실 근로시간 단축, 월 근로일수 감소, 취업자 증가, 시간당 임금인상에 유의미한 긍정적 영향을 미쳤음. 그러나 월 임금총액에는 유의미한 영향을 미치지 않았음.”

제3장 주5일 근무제와 실 근로시간, 장시간 근로 실태

1. 주5일 근무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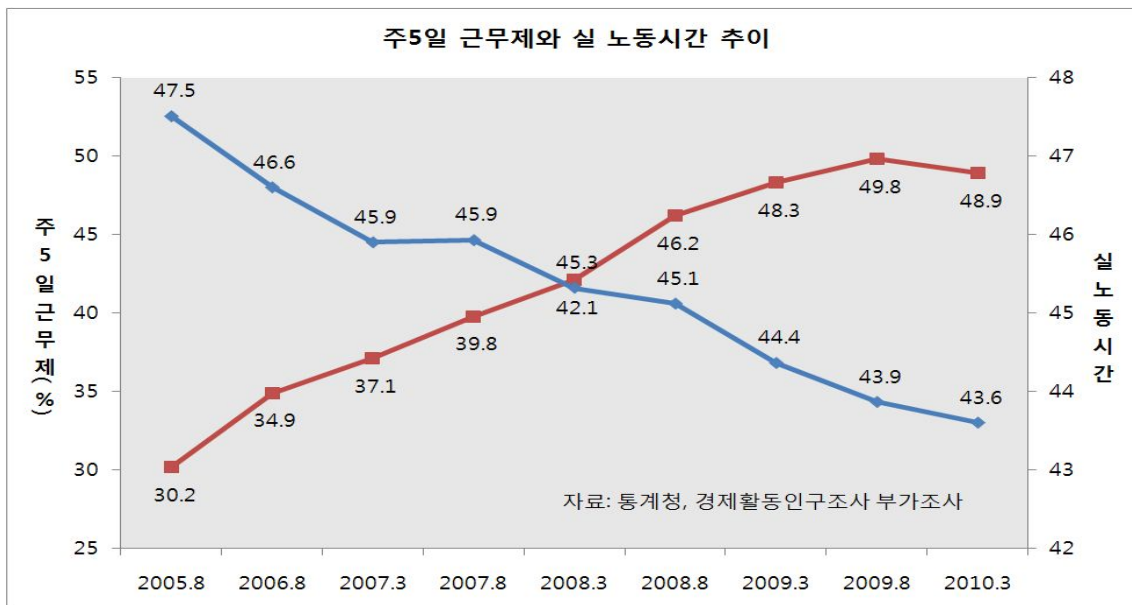
가. 연도별 추이

○ 경제활동인구조사 부가조사는 2005년 8월부터 주5일 근무제 적용을 조사하고 있음. 이에 따라 주5일 근무제 적용률을 계산하면, 2005년 8월 30.2%에서 2009년 8월 49.8%까지 4년 만에 19.6%p 증가했음. 같은 기간 실 근로시간은 주 47.5시간에서 43.9시간으로 3.6시간 단축되었음(<그림3> 참조).

- 주5일 근무제 적용률과 실 근로시간의 상관계수는 -0.973 으로 매우 밀접한 상관관계를 보이고 있음.

○ 2010년 3월 현재 주5일 근무제는 전체 노동자 1,662만 명 가운데 813만 명(48.9%)에게 적용되고 있음.

<그림3> 주5일 근무제 적용률과 실 근로시간 추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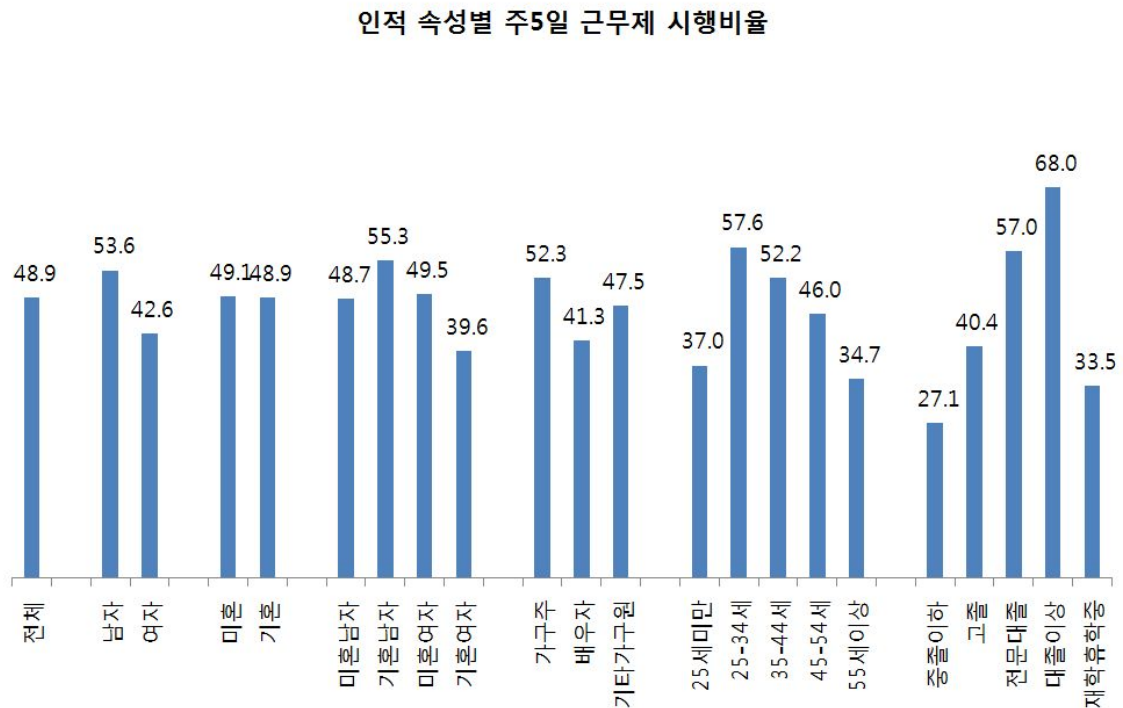


나. 인적 속성

o <그림4>와 <표1>은 2010년 3월 현재 주5일 근무제 적용률을 인적 속성별로 구분하여 살펴본 결과임.

- 기혼남성(55.3%)과 가구주(52.3%)는 주5일 근무제 적용률이 높고, 기혼여성(36.6%)과 배우자(41.3%)는 적용률이 낮음. 연령별로는 25-34세(57.6%)를 정점으로 나이가 들수록 적용률이 낮아지고, 학력별로는 학력수준이 낮을수록 적용률이 낮아짐. 즉 대졸이상은 68.0%인데, 고졸은 40.4%, 중졸이하는 27.1%로 그 격차가 큼. 이처럼 ‘고학력 기혼남성 청장년 가구주’보다 ‘저학력 기혼여성 저연령·고연령 배우자’의 적용률이 낮은 것은 일자리 속성의 차이에서 비롯된 것으로 해석됨.

<그림4> 인적 속성별 주5일 근무제 적용률(2010년 3월, 단위:%)



<표1> 인적속성별 주5일 근무제 적용률(2010년 3월, 단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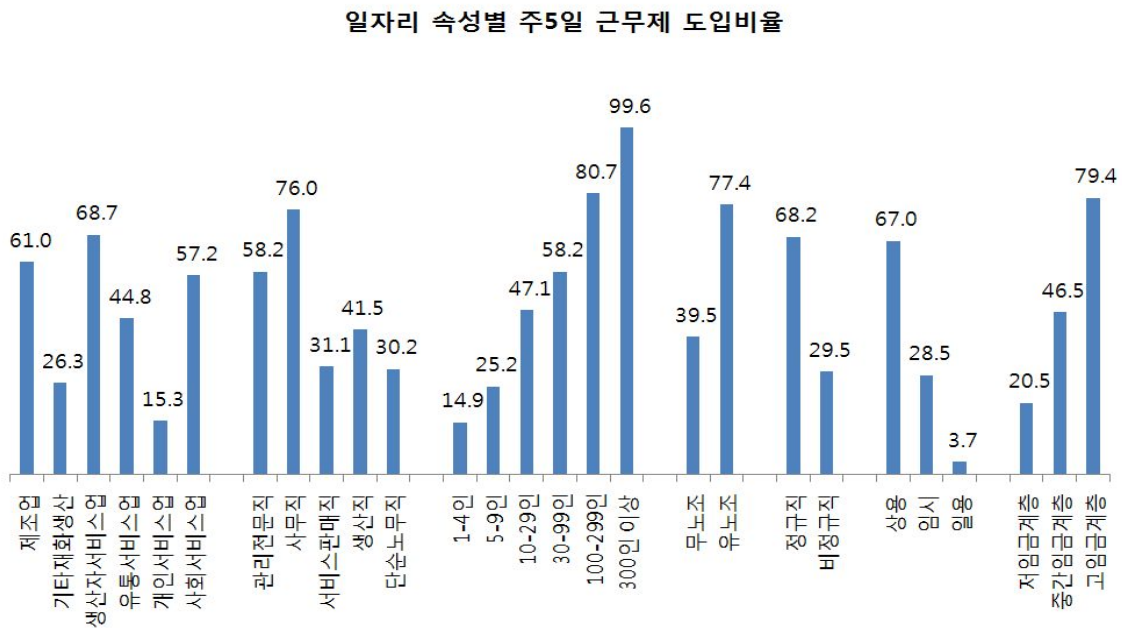
		1-4인	5-9인	10-29인	30-99인	100-299인	300인 이상	전체
전체		14.9	25.2	47.1	58.2	80.7	99.6	48.9
성별	남자	15.8	24.0	46.9	62.8	81.7	99.8	53.6
	여자	14.3	26.8	47.4	52.0	78.7	99.1	42.6
혼인	미혼	14.6	26.7	48.6	61.8	82.0	99.9	49.1
	기혼	15.1	24.6	46.6	57.0	80.2	99.5	48.9
성별 혼인	미혼남자	12.5	21.3	46.2	65.2	82.8	100.0	48.7
	기혼남자	17.2	25.1	47.2	62.0	81.3	99.7	55.3
	미혼여자	16.5	32.6	51.6	57.2	80.9	99.7	49.5
	기혼여자	13.5	23.9	45.6	50.1	77.5	98.6	39.6
가구 주관 계	가구주	15.0	24.4	47.4	60.6	81.7	99.7	52.3
	배우자	15.4	25.7	44.8	49.1	76.0	98.5	41.3
	기타가구원	14.3	26.6	48.4	61.8	81.1	99.8	47.5
연령 계층	25세미만	11.3	24.3	35.1	56.9	72.7	100.0	37.0
	25-34세	19.0	32.5	54.8	62.4	86.2	99.9	57.6
	35-44세	15.2	27.0	48.2	61.3	82.2	99.4	52.2
	45-54세	13.9	19.0	44.3	55.0	77.7	99.3	46.0
	55세이상	13.2	18.7	40.0	46.7	68.1	99.2	34.7
학력	중졸이하	8.2	10.7	34.8	49.3	73.2	98.3	27.1
	고졸	11.9	18.6	39.2	57.4	74.1	99.2	40.4
	전문대졸	23.0	35.9	54.0	66.7	80.3	99.5	57.0
	대졸이상	31.6	45.9	63.0	58.4	87.6	99.8	68.0
	재학휴학중	10.3	16.9	35.5	51.9	85.4	100.0	33.5

자료: 통계청 경제활동인구조사 부가조사(2010년 3월)

다. 일자리 속성

o <그림5>와 <표2>는 2010년 3월 주5일 근무제 적용률을 일자리 속성별로 구분하여 살펴본 결과임.

<그림5> 일자리 속성별 주5일 근무제 적용률(2010년 3월, 단위:%)



-산업별로는 생산자서비스업(68.7%)과 제조업(61.0%), 사회서비스업(57.2%)이 높고, 건설업을 비롯한 기타재화생산(26.3%)과 개인서비스업(15.3%)은 낮음. 직업별로는 사무직(76.0%)과 관리전문직(58.2%)이 높고, 서비스판매직(31.1%)과 단순노무직(30.2%)은 낮음.

-사업장 규모가 클수록 주5일 근무제 적용률이 높고, 작을수록 적용률이 낮음. 300인 이상 사업장(99.6%)은 사실상 100% 적용되고 있지만, 100~299인 사업장(80.7%)은 5명 중 4명, 30~99인 사업장(58.2%)은 5명 중 3명만 적용되고 있음. 이는 100~299인 사업장은 5명 중 1명, 30~99인 사업장은 5명 중 2명꼴로 근로기준법이 지켜지지 않고 있음을 말해줌.

-2011년 6월까지의 주5일 근무제를 시행할 법적 의무가 없는 20명 미만

사업장도 이미 시행하는 경우가 많음. 즉 5인 미만 사업장은 적용률이 14.9%이고, 5인 이상 10인 미만 사업장은 25.2%로 4명 중 1명꼴로 주5일 근무제가 적용되고 있음.

-노조유무, 고용형태, 종사상지위, 임금수준 별로 격차가 큼. 유노조 사업장(77.4%)은 무노조 사업장(39.5%)보다 적용률이 2배 높고, 정규직(68.2%)은 비정규직(29.5%)보다 2배 이상 높음. 종사상 지위별로는 상용직(67.0%), 임시직(28.5%), 일용직(3.7%) 순이고, 임금수준 별로는 고임금(79.4%), 중간임금(46.5%), 저임금 계층(20.5%) 순으로 임금수준이 높을수록 주5일 근무제 적용률이 높음.

<표2> 일자리 속성별 주5일 근무제 적용률(2010년 3월, 단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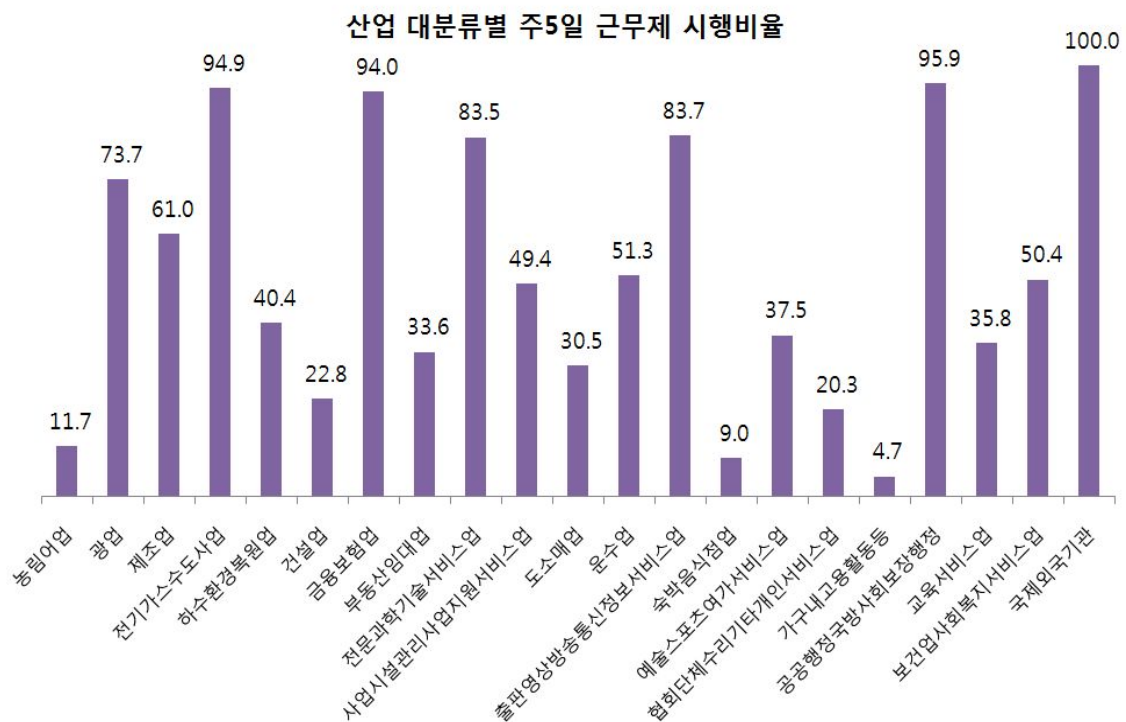
		1-4인	5-9인	10-29인	30-99인	100-299인	300인 이상	전체
전체		14.9	25.2	47.1	58.2	80.7	99.6	48.9
산업	제조업	12.3	18.6	40.5	70.7	88.3	99.8	61.0
	기타재화생산	5.8	10.0	26.4	49.5	70.6	99.1	26.3
	생산자서비스업	37.7	47.2	67.3	79.0	91.1	99.7	68.7
	유통서비스업	13.6	30.4	49.5	59.5	70.3	99.4	44.8
	개인서비스업	4.3	7.7	20.6	45.8	76.8	100.0	15.3
	사회서비스업	38.7	39.5	55.3	37.9	75.8	99.3	57.2
직업	관리전문직	27.9	38.6	53.9	50.2	82.0	99.8	58.2
	사무직	51.0	54.3	67.2	77.3	90.8	99.7	76.0
	서비스판매직	7.7	15.3	41.7	54.8	71.6	97.9	31.1
	생산직	7.7	11.8	32.2	55.8	71.9	99.6	41.5
	단순노무직	9.1	14.7	37.0	51.9	78.7	98.7	30.2
노조유무	무노조	13.3	22.8	41.3	61.2	80.3	98.7	39.5
	유노조	69.7	69.2	74.5	52.3	81.1	99.9	77.4
비정규직	정규직	35.4	42.1	58.1	62.7	84.5	99.8	68.2
	비정규직	10.9	16.5	36.6	50.4	67.8	98.4	29.5
종사상지위	상용	36.9	43.2	57.4	61.9	84.3	99.6	67.0
	임시	13.2	16.6	37.0	50.4	58.2	99.4	28.5
	일용	0.9	1.9	5.0	14.5	32.6	97.0	3.7
임금계층	저임금계층	7.6	11.9	30.1	38.8	53.9	97.2	20.5
	중간임금계층	18.5	27.0	43.5	59.0	77.0	99.2	46.5
	고임금계층	59.0	57.1	72.1	65.6	90.7	99.9	79.4

자료: 통계청 경제활동인구조사 부가조사(2010년 3월)

o <그림6>은 산업대분류 기준으로 산업을 세분해서 살펴본 결과임.

- 국제및외국기관(100.0%), 공공행정국방사회보장행정(95.9%), 전기가스 수도사업(94.9%), 금융보험업(94.0%)은 적용률이 90%대고, 출판영상방송통신정보서비스업(83.7%), 전문과학기술서비스업(83.5%)은 80%대로 적용률이 높음.
- 숙박음식점업(9.0%)과 가구내고용활동(4.7%)은 한 자리수고, 농림어업(11.7%)은 10%대, 기타개인서비스업(20.3%)과 건설업(22.8%)은 20%대, 도소매업(30.5%)과 부동산임대업(33.6%), 교육서비스업(35.8%), 예술스포츠여가서비스업(37.5%)은 30%대로 이들 산업은 적용률이 매우 낮음.

<그림6> 산업대분류별 주5일 근무제 적용률(2010년 3월, 단위:%)



<표3> 산업대분류별 주5일 근무제 적용률(2010년 3월, 단위:%)

	1-4인	5-9인	10-29 인	30-99 인	100- 299인	300인 이상	전체
농림어업	1.2	6.9	21.9	49.7	89.4	-	11.7
광업	-	63.4	15.7	94.4	100.0	100.0	73.5
제조업	12.3	18.6	40.5	70.7	88.3	99.8	61.0
전기가스수도사업	100.0	100.0	78.0	96.7	94.6	100.0	95.1
하수환경복원업	20.7	4.8	50.7	43.0	51.9	100.0	39.8
건설업	6.5	10.1	24.5	42.6	57.9	98.7	22.8
금융보험업	88.1	91.1	94.8	91.0	98.7	100.0	94.0
부동산임대업	13.2	17.6	37.9	62.3	91.4	100.0	33.7
전문과학기술서비스업	63.7	74.5	72.7	88.4	96.2	100.0	83.5
사업시설관리사업지원서비스업	34.0	30.7	45.0	61.2	77.6	98.1	49.4
도소매업	10.7	23.5	42.0	58.2	65.9	98.6	30.5
운수업	24.0	32.9	48.6	41.4	57.2	99.2	51.4
출판영상방송통신정보서비스업	72.6	67.0	74.2	81.1	96.4	100.0	83.7
숙박음식점업	1.2	2.3	16.0	38.4	75.0	100.0	9.0
예술스포츠여가서비스업	7.8	20.0	35.8	55.3	76.7	100.0	37.6
협회단체수리기타개인서비스업	8.7	17.0	21.5	45.8	79.0	100.0	20.3
가구내고용활동등	4.7						4.7
공공행정국방사회보장행정	91.6	89.5	93.9	91.4	96.5	99.9	95.9
교육서비스업	38.0	36.4	38.3	17.9	52.1	100.0	35.8
보건업사회복지서비스업	20.8	31.3	40.7	61.5	67.4	97.1	50.4
국제외국기관				100.0	100.0	100.0	100.0
전산업	14.9	25.2	47.1	58.2	80.7	99.6	48.9

자료: 통계청 경제활동인구조사 부가조사(2010년 3월)

o <표3>은 사업장 규모와 산업을 교차해서 주5일 근무제 적용률을 살펴본 결과임. 사업장 규모별로도 차이가 있지만 같은 규모에서도 산업에 따라 적용률이 크게 차이가 난다는 사실을 확인할 수 있음.

- 300인 이상 사업장은 모든 산업에서 주5일 근무제 적용률이 사실상 100%임. 100인 이상 300인 미만 사업장에서 교육서비스업(52.1%), 운수업(57.2%), 건설업(57.9%)은 법률로 강제되고 있음에도 적용률이 50%대

밖에 안 됨. 30인 이상 100인 미만 사업장에서 교육서비스업(17.9%), 숙박음식점업(38.4%), 운수업(41.4%), 건설업(42.6%)은 적용률이 절반도 안 됨.

- 이에 비해 근로기준법 적용대상에서 제외된 5인 미만 사업장도 전기가스 수도사업(100.0%), 공공행정사회보장행정(91.6%), 금융보험업(88.1%), 출판영상방송통신정보서비스업(72.6%), 전문과학기술서비스업(63.7%)은 적용률이 높음.

o 이상은 주5일 근무제 적용률을 높이려면 산업별 규모별로 실태를 점검해서 원인과 대책을 강구할 필요가 있음을 말해줌.

2. 실 근로시간

가. 평균값

o 2010년 3월 현재 노동자들의 실 근로시간 평균은 주43.6시간임. 주5일 근무제를 시행하는 곳은 주41.0시간으로, 시행하지 않는 곳(46.1시간)보다 5.2시간 짧음(<표4> 참조).

- 인적 속성과 일자리 속성별로 구분해서 살펴보면, 주5일 근무제를 시행하는 곳이 최소 0.3시간(25세 미만)부터 최대 10.3시간(임시직)까지 근로시간이 짧음. 이러한 차이는 아노바(anova) 테스트 결과 유의미함.

<표4> 인적 속성과 일자리 속성별 실 근로시간(2010년 3월 현재)

		노동자수(천명)			주5일제 적용률 (%)	주당 평소근로시간(시간)			
		전체	주5일제 미시행	주5일제 시행		전체	주5일제 미시행 (A)	주5일제 시행 (B)	격차 (A-B)
전체		16,616	8,489	8,127	48.9	43.6	46.1	41.0	5.2
성별	남자	9,541	4,427	5,114	53.6	45.2	49.1	41.8	7.3
	여자	7,075	4,062	3,013	42.6	41.4	42.8	39.5	3.3
혼인	미혼	4,572	2,329	2,243	49.1	43.4	45.4	41.4	4.0
	기혼	12,045	6,160	5,885	48.9	43.7	46.4	40.8	5.6
성별	미혼남자	2,434	1,249	1,185	48.7	44.7	47.3	42.0	5.3
혼인	기혼남자	7,107	3,178	3,929	55.3	45.4	49.9	41.8	8.1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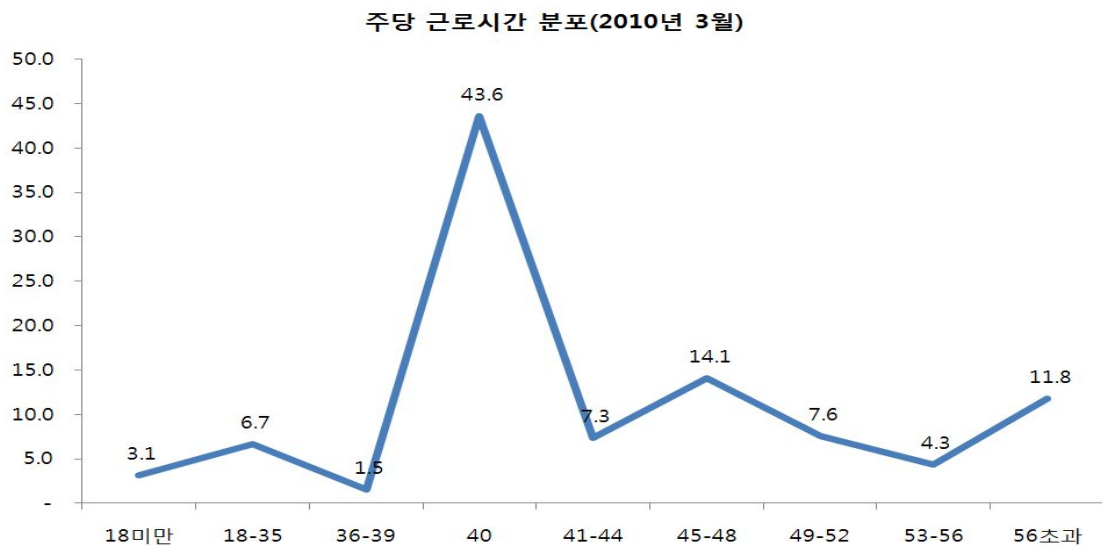
	미혼여자	2,137	1,080	1,057	49.5	42.0	43.2	40.7	2.5
	기혼여자	4,938	2,982	1,956	39.6	41.2	42.7	38.9	3.8
가구 주관 계	가구주	9,262	4,416	4,846	52.3	45.0	48.8	41.5	7.3
	배우자	3,436	2,016	1,420	41.3	40.7	41.8	39.1	2.7
	기타가구원	3,919	2,058	1,861	47.5	42.9	44.6	41.0	3.6
	계								
연령 계층	25세미만	1,197	754	443	37.0	40.5	40.6	40.3	0.3
	25-34세	4,675	1,982	2,693	57.6	44.0	47.4	41.5	5.9
	35-44세	4,727	2,259	2,468	52.2	43.7	46.4	41.3	5.0
	45-54세	3,850	2,079	1,771	46.0	44.4	47.0	41.3	5.7
	55세이상	2,168	1,416	752	34.7	42.7	45.6	37.3	8.3
학력	중졸이하	2,554	1,863	691	27.1	43.6	45.7	38.0	7.6
	고졸	5,966	3,555	2,411	40.4	45.6	48.2	41.7	6.5
	전문대졸	2,435	1,048	1,387	57.0	44.3	47.9	41.6	6.3
	대졸이상	5,051	1,618	3,433	68.0	41.9	44.1	40.9	3.2
	재학휴학중	609	405	204	33.5	35.5	33.8	39.0	5.2
산업	제조업	3,321	1,295	2,026	61.0	44.1	47.4	42.0	5.3
	기타재화생산	1,651	1,217	434	26.3	45.0	46.1	41.7	4.5
	생산자서비스업	2,756	862	1,894	68.7	43.8	48.8	41.6	7.2
	유통서비스업	3,272	1,806	1,466	44.8	45.1	47.2	42.6	4.6
	개인서비스업	2,161	1,831	330	15.3	46.3	47.3	40.8	6.6
	사회서비스업	3,454	1,478	1,976	57.2	39.1	40.7	37.9	2.7
직업	관리전문직	4,037	1,687	2,350	58.2	41.9	43.6	40.6	3.0
	사무직	3,410	818	2,592	76.0	41.8	45.6	40.5	5.1
	서비스판매직	2,965	2,044	921	31.1	45.0	46.6	41.5	5.1
	생산직	3,444	2,014	1,430	41.5	47.0	49.7	43.1	6.7
	단순노무직	2,759	1,925	834	30.2	42.8	44.3	39.2	5.2
종사 자규 모	1-4인	3,180	2,705	475	14.9	43.9	44.8	38.7	6.2
	5-9인	2,782	2,080	702	25.2	45.6	47.3	40.7	6.5
	10-29인	3,729	1,971	1,758	47.1	43.7	46.7	40.3	6.3
	30-99인	3,381	1,413	1,968	58.2	43.2	45.7	41.4	4.3
	100-299인	1,618	312	1,306	80.7	43.4	48.5	42.2	6.3
	300인 이상	1,928	8	1,920	99.6	41.0	48.0	40.9	7.0
노조 유무 가입	무노조	12,508	7,562	4,946	39.5	44.2	46.2	41.0	5.1
	유노조비조합원	2,123	603	1,520	71.6	40.7	43.4	39.6	3.8
	유노조조합원	1,986	324	1,662	83.7	43.2	49.5	41.9	7.6
비정 규직	정규직	8,334	2,650	5,684	68.2	44.0	48.7	41.9	6.9
	비정규직	8,283	5,840	2,443	29.5	43.2	44.9	38.9	6.0
종사 상지 위	상용	9,926	3,278	6,648	67.0	44.1	48.8	41.8	6.9
	임시	4,976	3,560	1,416	28.5	44.4	47.4	37.0	10.3
	일용	1,715	1,651	64	3.7	38.2	38.2	37.4	0.8
임금 계층	저임금계층	4,412	3,506	906	20.5	45.7	47.3	39.7	7.6
	중간임금계층	7,501	4,014	3,487	46.5	44.1	46.2	41.7	4.5
	고임금계층	4,705	970	3,735	79.4	40.9	41.8	40.6	1.2

자료: 통계청 경제활동인구조사 부가조사(2010년 3월)

2. 장시간 근로 실태

- 통계청 경제활동인구조사(2010년 3월)에서 주40시간 근무는 43.6%로 가장 많음. 주35시간 이하 단시간 근로는 9.8%고, 48시간을 초과하는 장시간 근로는 23.7%임. 52시간 초과는 16.1%, 56시간 초과는 11.8%임(<그림7>과 <표5> 참조).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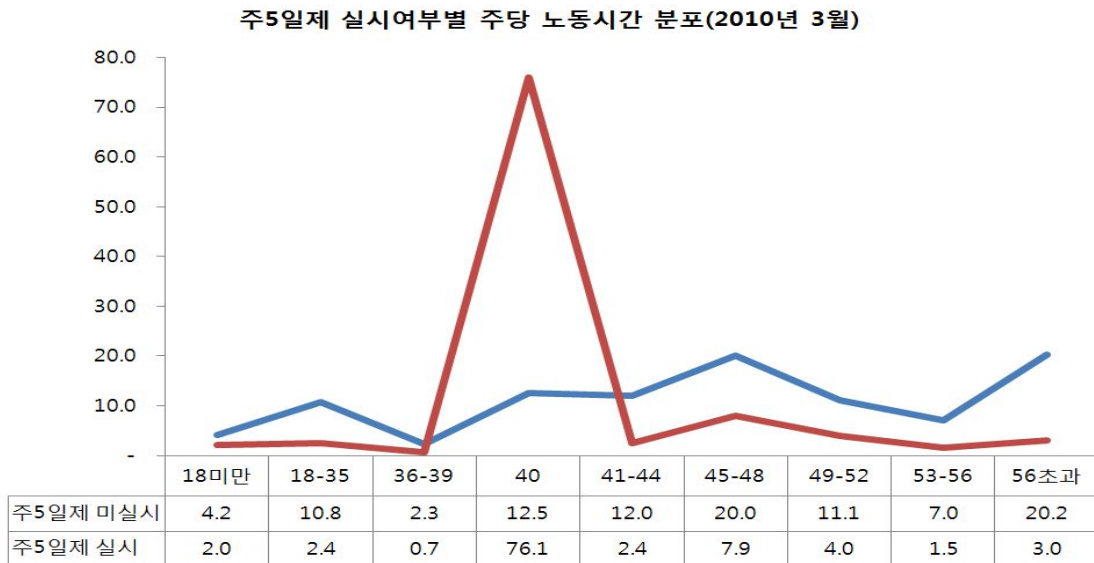
<그림7> 주당 근로시간 분포(2010년 3월, 단위:%)



- 주5일 근무제를 실시하는 사업장은 주40시간 근무가 76.1%로 압도적으로 많음. 주35시간 이하 단시간 근로는 4.4%고, 48시간을 초과하는 장시간 근로는 8.5%임. 연장근로 한도인 주52시간을 넘어서는 탈법적인 장시간 근로는 4.5%임(<그림8>과 <표5> 참조).

- 주5일 근무제를 실시하지 않는 사업장은 주40시간 근무가 12.5%밖에 안 됨. 주35시간 이하 단시간 근로는 15.0%이고, 48시간을 초과하는 장시간 근로는 38.3%임. 52시간 초과는 27.2%이고, 56시간 초과도 20.2%에 이 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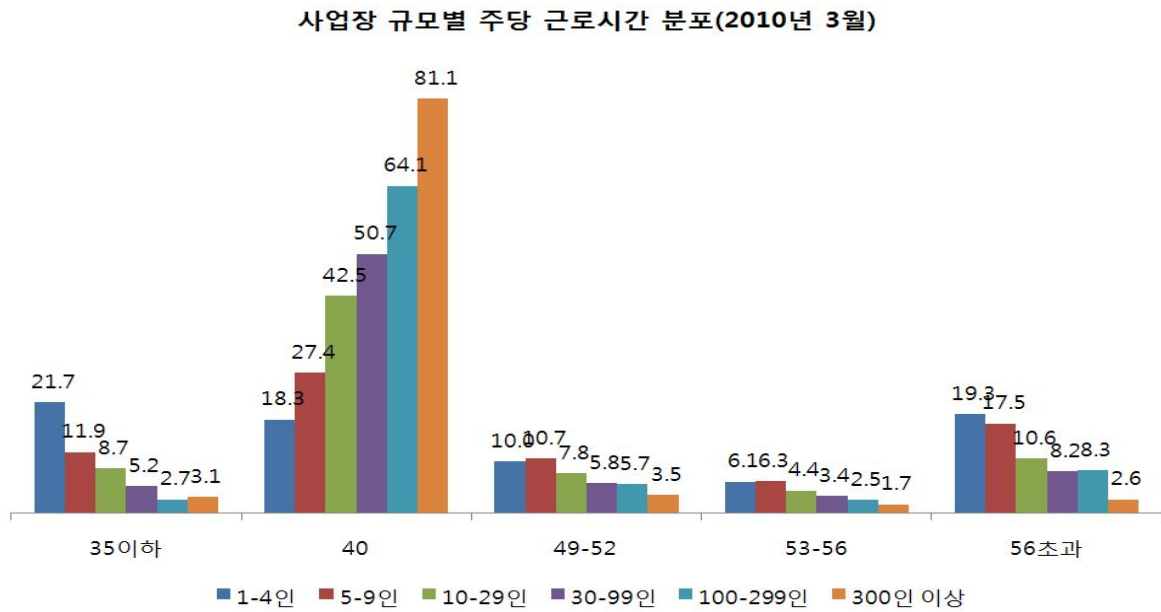
<그림8> 주5일 근무제 실시여부별 근로시간 분포(2010년 3월, 단위:%)



o 사업장 규모가 클수록 주40시간 근무가 많고, 주35시간 이하 단시간 근로와 주48시간을 초과하는 장시간 근로 비중이 낮아짐(<그림9>와 <표5> 참조).

- 300인 이상 사업장은 주40시간 근무가 81.1%임. 그러나 현행법상 연장근로한도를 탈법적으로 초과해서 주53시간 이상 근무하는 경우도 4.3%임.

<그림9> 사업장 규모별 근로시간 분포(2010년 3월, 단위:%)



<표5> 인적 속성과 일자리 속성별 실 근로시간 분포(2010년 3월 현재, 단위:%)

		18 미만	18 -35	36 -39	40 시간	41 -44	45 -48	49 -52	53 -56	56 초과
전체		3.1	6.7	1.5	43.6	7.3	14.1	7.6	4.3	11.8
성별	남자	1.5	3.0	0.8	46.8	6.6	14.5	8.6	4.8	13.4
	여자	5.3	11.6	2.4	39.4	8.3	13.5	6.2	3.7	9.5
혼인	미혼	3.5	6.1	1.0	43.1	6.9	15.5	8.7	4.4	10.9
	기혼	3.0	6.9	1.7	43.8	7.5	13.5	7.2	4.3	12.1
성별 혼인	미혼남자	2.3	4.8	0.8	42.1	6.0	16.1	9.7	5.1	13.1
	기혼남자	1.2	2.4	0.8	48.3	6.8	14.0	8.3	4.7	13.6
	미혼여자	4.9	7.4	1.2	44.3	8.0	14.9	7.4	3.6	8.4
	기혼여자	5.5	13.4	3.0	37.2	8.5	12.9	5.7	3.8	10.0
가구주 관계	가구주	1.9	3.8	1.1	45.8	6.9	13.9	8.3	4.5	13.8
	배우자	4.9	13.8	3.1	39.4	9.0	13.0	5.4	3.5	7.9
	기타가구원	4.3	7.2	1.0	42.1	6.9	15.6	8.0	4.6	10.3
연령 계층	25세미만	9.9	12.2	1.5	33.5	5.4	14.2	7.9	4.7	10.7
	25-34세	1.2	3.5	0.8	50.4	7.7	15.0	7.6	4.2	9.6
	35-44세	1.7	5.7	1.4	46.7	8.0	14.6	7.9	4.0	9.9
	45-54세	1.7	6.7	1.8	42.8	7.2	14.2	7.9	4.5	13.2
	55세이상	9.0	12.5	2.7	29.3	6.2	10.7	6.2	4.8	18.5
학력	중졸이하	6.9	13.9	2.7	26.0	4.5	13.1	8.2	5.2	19.6

	고졸	1.8	6.4	1.7	36.9	6.2	16.4	9.1	5.4	16.2
	전문대졸	0.9	2.9	1.1	50.1	7.3	15.6	8.0	4.4	9.7
	대졸이상	1.9	3.6	0.9	59.0	10.6	11.8	5.5	2.6	4.1
	재학휴학중	18.9	19.4	1.6	30.0	3.8	8.9	5.6	3.6	8.2
산업	제조업	0.4	2.3	0.6	52.1	7.6	17.2	7.9	5.1	6.9
	기타재화생산	0.9	7.9	1.3	35.0	4.6	19.7	12.9	4.4	13.3
	생산자서비스업	1.2	3.2	1.6	60.6	4.4	11.0	4.9	3.2	10.0
	유통서비스업	2.2	6.6	1.8	37.5	4.6	16.6	9.4	5.8	15.4
	개인서비스업	6.2	13.1	2.2	17.9	4.4	13.2	8.5	5.9	28.7
	사회서비스업	7.4	9.0	1.7	47.9	15.1	9.0	4.7	2.1	3.1
직업	관리전문직	2.9	4.4	1.3	50.6	13.2	13.3	7.3	2.8	4.0
	사무직	1.3	2.1	0.5	67.5	6.7	11.6	5.1	2.6	2.8
	서비스판매직	4.2	12.1	2.7	29.1	3.6	13.3	7.8	5.7	21.6
	생산직	0.3	2.8	0.6	37.2	6.3	19.4	10.6	6.5	16.4
	단순노무직	7.8	14.8	2.9	27.5	4.8	12.5	7.2	4.5	17.9
종사자 규모	1-4인	6.6	15.2	3.0	18.3	5.1	16.4	10.0	6.1	19.3
	5-9인	2.7	9.2	1.7	27.4	6.8	17.8	10.7	6.3	17.5
	10-29인	3.1	5.7	1.4	42.5	7.9	16.7	7.8	4.4	10.6
	30-99인	2.2	3.0	1.3	50.7	13.5	11.9	5.8	3.4	8.2
	100-299인	0.9	1.7	0.4	64.1	5.1	11.2	5.7	2.5	8.3
	300인 이상	1.6	1.5	0.4	81.1	1.8	5.9	3.5	1.7	2.6
노조 유무	무노조	3.3	8.1	1.7	36.9	6.3	16.0	8.9	5.1	13.7
	유노조	2.6	2.3	0.8	64.0	10.3	8.3	3.7	2.1	5.9
비정 규직	정규직		0.2	0.4	59.0	9.6	13.6	6.7	3.5	6.9
	비정규직	6.3	13.2	2.6	28.1	5.1	14.5	8.5	5.1	16.6
종사상 지위	상용	0.2	0.8	0.6	57.7	9.4	13.4	6.6	3.6	7.8
	임시	6.2	11.3	2.7	24.5	5.0	16.0	8.4	6.3	19.6
	일용	11.2	27.0	3.3	17.6	2.2	12.6	11.3	2.8	12.0
임금 계층	저임금계층	6.2	14.6	2.9	17.8	5.0	13.9	7.6	6.4	25.8
	중간임금계층	2.1	5.3	1.3	41.3	6.9	17.6	10.1	5.1	10.2
	고임금계층	1.9	1.4	0.6	71.5	10.1	8.6	3.6	1.1	1.2
주5일제	미실시	4.2	10.8	2.3	12.5	12.0	20.0	11.1	7.0	20.2
	실시	2.0	2.4	0.7	76.1	2.4	7.9	4.0	1.5	3.0

자료: 통계청 경제활동인구조사 부가조사(2010년 3월)

제4장 주5일 근무제 적용 결정요인(로짓분석)

1. 전규모 (모형1)

- o <표6>의 (모형1)은 주5일 근무제 적용을 종속변수로 하고, 인적 속성(성, 혼인, 가구주관계, 연령, 학력)과 일자리 속성(근속, 직업, 산업, 사업장규모, 노조유무, 고용형태, 임금수준)을 설명변수로 하여 로짓분석한 결과임.
- o 인적 속성은 성과 연령만 유의미한 영향을 미치고 있음. 다른 조건을 통제하지 않은 상태에서는 남성이 여성보다 적용률이 높지만(<표1> 참조), 다른 조건을 통제하면 여성이 남성보다 주5일 근무제를 적용받을 확률이 높음. 연령별로도 다른 조건을 통제하지 않은 상태에서는 35세를 정점으로 적용률이 하락하지만, 다른 조건을 통제한 상태에서는 43세를 정점으로 주5일제를 적용받을 확률이 높아짐.
- o 다른 조건을 통제한 상태에서 주5일제를 적용받을 확률은 직업별로는 ‘사무직>단순노무직>판매서비스직>생산직≒관리전문직’ 순이고, 산업별로는 ‘생산자서비스업>제조업>사회서비스업≒유통서비스업>기타재화생산≒개인서비스업’ 순임. 사업장 규모가 클수록, 임금수준이 높을수록 주5일 근무제를 적용받을 확률이 높아짐. 유노조 사업장은 무노조 사업장보다, 정규직은 비정규직보다 적용받을 확률이 높음.

<표6> 주5일 근무제 적용 결정요인(로짓분석, 종속변수: 주5일 근무제 적용)

	(모형1) 전규모			(모형2) 30인 이상			(모형3) 30인 미만		
	계수	p값		계수	p값		계수	p값	
여자	0.196	0.000	***	0.090	0.312		0.240	0.001	***
기혼	-0.075	0.297		-0.121	0.299		-0.060	0.542	
배우자	0.045	0.471		-0.120	0.237		0.202	0.014	*
기타가구원	0.060	0.382		0.040	0.730		0.055	0.559	
연령	-0.077	0.000	***	-0.040	0.077		-0.080	0.000	***
연령제곱	0.001	0.000	***	0.000	0.140		0.001	0.000	***
교육년수	0.000	0.991		-0.046	0.004	**	0.048	0.000	***
근속년수	0.007	0.416		0.007	0.579		0.010	0.425	
근속제곱	-0.002	0.000	***	-0.001	0.005	**	-0.001	0.014	*
관리전문직	-0.003	0.963		0.019	0.866		-0.037	0.713	
사무직	1.037	0.000	***	1.037	0.000	***	0.998	0.000	***
판매서비스직	0.263	0.000	***	0.520	0.000	***	0.150	0.098	
단순노무직	0.465	0.000	***	0.643	0.000	***	0.436	0.000	***
기타재화생산	-1.091	0.000	***	-1.161	0.000	***	-0.860	0.000	***
생산자서비스	0.636	0.000	***	0.280	0.017		0.993	0.000	***
유통서비스업	-0.369	0.000	***	-0.708	0.000	***	-0.026	0.770	
개인서비스업	-1.153	0.000	***	-1.062	0.000	***	-0.909	0.000	***
사회서비스업	-0.355	0.000	***	-1.426	0.000	***	0.646	0.000	***
1-4인	-1.093	0.000	***				-0.753	0.000	***
5-9인	-0.862	0.000	***				-0.571	0.000	***
10-29인	-0.202	0.000	***						
100-299인	1.013	0.000	***	0.984	0.000	***			
300인이상	4.717	0.000	***	5.015	0.000	***			
노조유	0.356	0.000	***	-0.072	0.276		1.267	0.000	***
비정규직	-0.374	0.000	***	-0.300	0.000	***	-0.443	0.000	***
로그시간당임금	1.409	0.000	***	1.363	0.000	***	1.492	0.000	***
상수	-11.24	0.000	***	-10.02	0.000	***	-13.43	0.000	***
관측치	26,423			10,840			15,583		
모형 χ^2 (자유도)	5,333***(26)			1,287***(23)			2,761***(23)		
LN	-11,491			-4,165			-6,778		
모형 설명력	0.372			0.317			0.291		

주: *는 5%, **는 1%, ***는 0.1% 유의수준에서 통계적으로 유의미. 통계적 유의성은 Wald test 결과임.

2. 30인 이상 사업장(모형2)

- o 2010년 3월 현재 20인 이상 사업 또는 사업장에서는 주5일 근무제가 법적 의무임. 경제활동인구조사는 사업장 규모를 '10~29인, 30~99인'으로 구분하고 있음. 따라서 <표6>에서 (모형2)는 주5일 근무제 적용이 법적 으로 강제되는 30인 이상 사업장만 로짓분석한 결과임.

- 학력 이외의 인적 속성은 모두 유의미하지 않음. 게다가 학력은 계수값의 부호가 (-)여서 기술통계와는 거꾸로 학력수준이 낮을수록 주5일 근무제를 적용받을 확률이 높음.
- 직업별로는 ‘사무직>단순노무직>판매서비스직>생산직≒관리전문직’ 순이고, 산업별로는 ‘생산자서비스업≒제조업>유통서비스업>개인서비스업>기타재화서비스업>사회서비스업’ 순임. 사업장 규모가 클수록, 임금수준이 높을수록, 그리고 비정규직보다는 정규직이 주5일 근무제를 적용받을 확률이 높음. 그렇지만 주5일 근무제 적용이 법률로 강제되면서 노조효과는 사라짐.

3. 30인 미만 사업장(모형3)

- <표6>에서 (모형3)은 30인 미만 사업장만 로짓분석한 결과임. (모형2)와 달리 성, 연령, 학력 등 인적 속성 변수도 대부분 통계적으로 유의미. 이는 법적으로 주5일 근무제가 강제된 30인 이상 사업장에서는 인적 속성이 주5일 근무제 시행에 영향을 미칠 소지가 없지만, 법적 의무가 없는 사업장에서는 영향을 미침을 말해줌.
- 다른 조건을 통제한 상태에서 여성은 남성보다 주5일 근무제를 적용받을 확률이 높고, 연령별로는 41세를 저점으로 나이가 젊거나 많을수록 주5일 근무제를 적용받을 확률이 높아지는 U자를 그림. 학력수준이 높을수록 적용받을 확률은 높아짐.
- 다른 조건을 통제한 상태에서 주5일 근무제를 적용받을 확률은 직업별로는 ‘사무직>단순노무직>판매서비스직>생산직≒관리전문직’ 순이고, 산업별로는 ‘생산자서비스업>사회서비스업>제조업≒유통서비스업>기타재화생산≒개인서비스업’ 순임. 사업장 규모가 클수록, 임금수준이 높을수록, 주5일 근무제를 적용받을 확률이 높음. 유노조 사업장이 무노조 사업장보다, 정규직이 비정규직보다 적용받을 확률이 높음.
- 이상으로부터 우리는 다음과 같은 예측을 할 수 있음. “2011년 7월부터 5인 이상 20인 미만 사업장으로 주5일 근무제가 확대되면, 노조유무와 인적 속성이 미치는 영향은 줄어들거나 사라질 것임. 사업장 규모, 고용형태, 임

금수준이 미치는 영향은 여전히 유의미하지만 그 영향력은 줄어듦.”

제5장 주5일 근무제가 실근로시간에 미친 영향(회귀분석)

- <표7>에서 (모형1)은 실 근로시간 로그값을 종속변수로 하고, 인적 속성(성, 혼인, 가구주관계, 연령, 학력)과 일자리 속성(근속, 직업, 산업, 사업장규모, 노조유무, 고용형태)을 통제변수로 하고, 주5일 근무제 적용과 임금수준을 설명변수로 하여 회귀분석한 결과임.
 - 비정규직 이외에 파트타임을 고용형태에 추가한 것은, 파트타임을 추가하기 전에는 모형의 설명력이 20.7%지만 파트타임을 추가하면 모형의 설명력이 67.0%로 개선될 정도로, 파트타임이 실 근로시간에 미치는 영향이 크기 때문임.
- (모형1)에서 주5일 근무제 적용은 계수 값이 -0.120^{***} 임. 이는 다른 조건을 통제하더라도 주5일 근무제가 실 근로시간을 11.3%(5.2시간) 단축시킴을 의미함. 법적으로 강제된 30인 이상 사업장에서는 10.5%(4.8시간), 30인 미만 사업장에서는 11.7%(5.4시간) 실 근로시간 단축요인으로 작용했음.
- 종속변수는 실 근로시간 로그값, 설명변수는 시간당 임금 로그값이므로, 시간당 임금의 계수 값은 임금이 대한 근로시간 탄력성이 됨. (모형1)에서 실 근로시간 탄력성은 -0.145^{***} 임. 이는 다른 조건이 동일할 때 임금이 10% 인상되면 실 근로시간이 1.45% 단축된다는 의미임.

<표7> 실 근로시간 결정요인(회귀분석, 종속변수: 근로시간 로그값)

	(모형1) 전규모			(모형2) 30인 이상			(모형3) 30인 미만		
	계수	p값		계수	p값		계수	p값	
여자	-0.047	0.000	***	-0.050	0.000	***	-0.047	0.000	***
기혼	0.002	0.685		-0.008	0.140		0.009	0.144	
배우자	-0.040	0.000	***	-0.021	0.003	**	-0.048	0.000	***
기타가구원	-0.015	0.002	**	-0.025	0.000	***	-0.009	0.174	
연령	0.016	0.000	***	0.011	0.000	***	0.018	0.000	***
연령제곱	-0.000	0.000	***	-0.000	0.000	***	-0.000	0.000	***
교육년수	0.002	0.002	**	0.003	0.003	**	0.002	0.019	*
근속년수	0.004	0.000	***	0.002	0.000	***	0.006	0.000	***
근속제곱	-0.000	0.000	***	-0.000	0.364		-0.000	0.000	***
관리전문직	-0.004	0.421		-0.011	0.059		-0.001	0.880	
사무직	-0.028	0.000	***	-0.021	0.000	***	-0.039	0.000	***
판매서비스직	0.020	0.000	***	0.000	0.985		0.029	0.000	***
단순노무직	-0.016	0.001	***	-0.013	0.087		-0.017	0.007	**
기타재화생산	0.001	0.760		0.020	0.001	***	0.002	0.733	
생산자서비스	0.035	0.000	***	0.026	0.000	***	0.050	0.000	***
유통서비스업	0.028	0.000	***	0.038	0.000	***	0.029	0.000	***
개인서비스업	0.047	0.000	***	-0.005	0.674		0.058	0.000	***
사회서비스업	-0.026	0.000	***	-0.023	0.000	***	-0.017	0.024	*
1-4인	-0.012	0.033					-0.020	0.000	***
5-9인	0.014	0.004	**				0.011	0.017	*
10-29인	0.000	0.930							
100-299인	0.022	0.000	***	0.015	0.000	***			
300인이상	0.031	0.000	***	0.025	0.000	***			
노조유	-0.006	0.063		-0.004	0.246		-0.015	0.020	*
비정규직	-0.031	0.000	***	-0.035	0.000	***	-0.022	0.000	***
파트타임	-0.889	0.000	***	-1.002	0.000	***	-0.864	0.000	***
로그시간당임금	-0.145	0.000	***	-0.140	0.000	***	-0.145	0.000	***
주5일제	-0.120	0.000	***	-0.111	0.000	***	-0.125	0.000	***
상수	4.907	0.000	***	4.983	0.000	***	4.848	0.000	***
관측치	26,423			10,840			15,583		
모형 설명력	0.670			0.645			0.683		

주: *는 5%, **는 1%, ***는 0.1% 유의수준에서 통계적으로 유의미.

제6장 장시간 근로 결정요인(다항 로짓분석)

- <표8>은 주당 실 근로시간을 단시간 근로(35시간 이하)와 정상근로(36시간 이상 48시간 이하), 장시간 근로(48시간 초과)로 구분한 뒤, 정상근로를 기준변수로 하여 단시간 근로와 장시간 근로 결정요인을 다항 로짓분석한 결과임.
- (모형1)에서 여성 배우자는 단시간 근로, 남성 가구주는 장시간 근로 확률이 높음. 연령별로 단시간 근로는 42세를 저점으로 하는 U자를 그리고, 장시간 근로는 45세를 정점으로 하는 역U자를 그림. 다른 조건이 같을 때 장시간 근로는 45세가 가장 많고 이보다 나이가 많거나 적으면 줄어듦.
- 직업별로 단순노무직은 단시간 근로 확률이 높고, 장시간 근로 확률은 낮음. 판매서비스직은 단시간과 장시간 근로 확률 모두 높고, 사무직은 장시간 근로 확률이 낮음. 산업별로 개인서비스업과 유통서비스업, 기타재화생산은 단시간과 장시간 근로 확률 모두 높음.
- 사업장 규모별로 10인 미만 영세업체는 단시간 근로와 장시간 근로 확률 모두 높음. 노조가 있는 사업장은, 그리고 임금수준이 높을수록 장시간 근로 확률이 낮음. 이는 노조가 장시간 근로를 방지하는 역할을 담당하고 있고, 저임금과 장시간 근로는 동전의 양면임을 말해줌.
- (모형2)는 (모형1)의 설명변수에 ‘주5일 근무제’를 추가한 것임. 주5일 근무제는 계수 값이 -1.102^{***} 와 -1.504^{***} 로 단시간 근로와 장시간 근로 축소에 유의미한 영향을 미쳤음. (모형1)에서는 10인 미만 영세업체에서 장시간 근로 확률이 높지만, 주5일 근무제를 추가한 (모형2)에서는 100인 이상 사업체에서 장시간 근로 확률이 높음. 이는 20인 미만 영세업체에 주5일 근무제가 도입되면, 이들 영세업체에서 장시간 근로가 줄어들 가능성을 말해줌. 주5일 근무제를 설명변수에 추가할 때 노조 계수 값이 줄어드는 것은, ‘주5일 근무제’ 도입이 노조효과를 부분적으로 상쇄하기 때문임.

<표8> 단시간과 장시간근로 결정요인(다중로짓분석, 36~48시간 기준)

	(모형1)						(모형2)					
	35시간이하			48시간초과			35시간이하			48시간초과		
	계수	p값		계수	p값		계수	p값		계수	p값	
여자	0.290	0.000	***	-0.822	0.000	***	0.285	0.000	***	-0.787	0.000	***
기혼	0.154	0.219		0.001	0.990		0.134	0.288		-0.021	0.771	
배우자 기타가구원	0.719 0.012	0.000 0.912	***	-0.606 -0.344	0.000 0.000	***	0.718 0.000	0.000 0.998	***	-0.596 -0.342	0.000 0.000	***
연령	-0.219	0.000	***	0.061	0.000	***	-0.226	0.000	***	0.051	0.000	***
연령제곱	0.003	0.000	***	-0.001	0.000	***	0.003	0.000	***	-0.001	0.000	***
교육년수	0.010	0.469		-0.011	0.203		0.013	0.318		-0.007	0.441	
근속년수	-0.185	0.000	***	0.066	0.000	***	-0.181	0.000	***	0.071	0.000	***
근속제곱	0.006	0.000	***	-0.003	0.000	***	0.005	0.000	***	-0.003	0.000	***
관리전문직	0.211	0.144		-0.056	0.441		0.161	0.276		-0.015	0.844	
사무직	-0.091	0.541		-0.666	0.000	***	0.128	0.403		-0.475	0.000	***
판매서비스직	0.635	0.000	***	0.172	0.010	*	0.679	0.000	***	0.236	0.001	***
단순노무직	0.742	0.000	***	-0.461	0.000	***	0.813	0.000	***	-0.367	0.000	***
기타재화생산	0.679	0.000	***	0.254	0.000	***	0.495	0.000	***	0.033	0.655	
생산자서비스	-0.326	0.021	*	0.035	0.618		-0.170	0.239		0.201	0.007	**
유통서비스업	0.725	0.000	***	0.586	0.000	***	0.680	0.000	***	0.509	0.000	***
개인서비스업	1.045	0.000	***	0.943	0.000	***	0.923	0.000	***	0.769	0.000	***
사회서비스업	1.528	0.000	***	-0.090	0.245		1.673	0.000	***	-0.151	0.060	
1-4인	0.924	0.000	***	0.192	0.003	**	0.752	0.000	***	-0.129	0.062	
5-9인	0.530	0.000	***	0.380	0.000	***	0.385	0.000	***	0.081	0.219	
10-29인	0.235	0.015	*	0.088	0.133		0.216	0.027	*	-0.062	0.316	
100-299인	-0.082	0.632		0.062	0.422		0.134	0.442		0.350	0.000	***
300인이상	0.184	0.252		-0.119	0.214		0.653	0.000	***	0.488	0.000	***
노조유	-0.046	0.627		-0.321	0.000	***	0.070	0.465		-0.181	0.003	**
비정규직	4.036	0.000	***	-0.125	0.014	*	4.050	0.000	***	-0.208	0.000	***
로그시간당임금	-0.015	0.860		-1.876	0.000	***	0.115	0.178		-1.629	0.000	***
주5일제							-1.102	0.000	***	-1.504	0.000	***
상수	-3.321	0.000	***	15.726	0.000	***	-4.022	0.000	***	14.313	0.000	***
관측치	26,423						26,423					
모형 χ^2 (자유도)	5,186*** (52)						5,884*** (54)					
LN	-16,045						-15,435					
모형 설명력	0.277						0.304					

주: *는 5%, **는 1%, ***는 0.1% 유의수준에서 통계적으로 유의미. 통계적 유의성은 Wald test 결과임.

o <표9>는 주당 실 근로시간을 단시간 근로(35시간 이하)와 정상근로(36시간 이상 52시간 이하), 탈법적인 장시간 근로(52시간 초과)로 구분한 뒤, 정상근로를 기준변수로 하여 단시간 근로와 장시간 근로 결정요인을 다항 로짓분석한 결과임. 계수 값에 부분적으로 차이가 있을 뿐, 분석결과는 <표8>과 대체로 동일함.

<표9> 단시간과 장시간근로 결정요인2 (다중로짓분석, 36~52시간 기준)

	(모형1)						(모형2)					
	35시간이하			52시간초과			35시간이하			52시간초과		
	계수	p값		계수	p값		계수	p값		계수	p값	
여자	0.358	0.000	***	-0.875	0.000	***	0.356	0.000	***	-0.832	0.000	***
기혼	0.185	0.134		0.131	0.110		0.171	0.168		0.118	0.159	
배우자	0.777	0.000	***	-0.599	0.000	***	0.777	0.000	***	-0.590	0.000	***
기타가구원	0.055	0.591		-0.322	0.000	***	0.047	0.649		-0.313	0.000	***
연령	-0.229	0.000	***	0.047	0.001	***	-0.235	0.000	***	0.039	0.005	**
연령제곱	0.003	0.000	***	0.000	0.001	***	0.003	0.000	***	-0.000	0.008	**
교육년수	0.012	0.347		-0.004	0.711		0.016	0.225		0.001	0.944	
근속년수	-0.189	0.000	***	0.069	0.000	***	-0.185	0.000	***	0.074	0.000	***
근속제곱	0.006	0.000	***	-0.003	0.000	***	0.005	0.000	***	-0.004	0.000	***
관리전문직	0.170	0.236		-0.430	0.000	***	0.118	0.418		-0.400	0.000	***
사무직	-0.055	0.711		-0.875	0.000	***	0.150	0.325		-0.677	0.000	***
판매서비스직	0.630	0.000	***	0.242	0.001	***	0.669	0.000	***	0.312	0.000	***
단순노무직	0.792	0.000	***	-0.436	0.000	***	0.856	0.000	***	-0.338	0.000	***
기타재화생산	0.587	0.000	***	0.036	0.683		0.431	0.002	**	-0.166	0.058	
생산자서비스	-0.289	0.041	*	0.271	0.001	***	-0.140	0.330		0.434	0.000	***
유통서비스업	0.674	0.000	***	0.643	0.000	***	0.622	0.000	***	0.532	0.000	***
개인서비스업	1.002	0.000	***	1.167	0.000	***	0.897	0.000	***	0.990	0.000	***
사회서비스업	1.546	0.000	***	-0.071	0.464		1.702	0.000	***	-0.092	0.358	
1-4인	0.876	0.000	***	0.032	0.672		0.729	0.000	***	-0.273	0.001	***
5-9인	0.484	0.000	***	0.286	0.000	***	0.359	0.000	***	-0.011	0.890	
10-29인	0.226	0.018	*	0.035	0.609		0.213	0.028	*	-0.117	0.110	
100-299인	-0.093	0.586		0.045	0.615		0.104	0.551		0.339	0.001	***
300인이상	0.165	0.303		-0.190	0.115		0.606	0.000	***	0.522	0.000	***
노조유	-0.007	0.945		-0.157	0.018	*	0.106	0.272		0.032	0.656	
비정규직	4.046	0.000	***	-0.151	0.010	*	4.068	0.000	***	-0.222	0.000	***
로그시간당임금	0.140	0.100		-1.952	0.000	***	0.250	0.003	**	-1.714	0.000	***
주5일제							-1.004	0.000	***	-1.596	0.000	***
상수	-4.858	0.000	***	15.775	0.000	***	-5.492	0.000	***	14.336	0.000	***
관측치	26,423						26,423					
모형 χ^2 (자유도)	4,860***(52)						5,328***(54)					
LL	-13,870						-13,402					
모형 설명력	0.294						0.318					

주: *는 5%, **는 1%, ***는 0.1% 유의수준에서 통계적으로 유의미. 통계적 유의성은 Wald test 결과임.

제7장 맺는말

1. 실근로시간 단축

- 주5일 근무제를 시행한 곳은 실 근로시간이 주41.0시간이고, 주40시간 근무가 76.1%로 압도적으로 많음. 주48시간을 초과하는 장시간 근로는 8.5%이고, 연장근로 한도(주12시간)를 넘어서는 탈법적인 장시간 근로는 4.5%임.
- 주5일 근무제를 시행하지 않는 곳은 실 근로시간이 46.1시간으로 5.2시간 길음. 주40시간 근무는 12.5%로 8명 중 1명꼴이고, 주48시간을 초과하는 장시간 근로가 38.3%나 됨. 주52시간 초과는 27.2%, 주56시간 초과는 20.2%임.

<표10> 주당 실 근로시간 평균값과 분포(2010년 3월 현재)

		실근로시간 평균값	분포			
			40시간	48시간 초과	52시간 초과	56시간 초과
주5일 근무제	실시	41.0시간	76.1%	8.5%	4.5%	3.0%
	미실시	46.1시간	12.5%	38.3%	27.2%	20.2%

자료: 통계청 경제활동인구조사 부가조사(2010년 3월)

- 다른 조건을 통제한 상태에서 실 근로시간 결정요인을 회귀분석 했을 때, 주5일 근무제는 회귀계수 값이 -0.120^{***} 로 0.1% 유의수준에서 유의미. 즉 다른 조건이 동일하더라도 주5일 근무제 사업장은 그렇지 않은 사업장보다 실 근로시간이 11.3%(5.2시간) 짧음.
- 다른 조건을 통제한 상태에서 장시간 근로 결정요인을 다항 로짓분석 하면, 주5일 근무제는 로짓 계수 값이 -1.504^{***} (승산비 0.222)로 0.1% 유의수준에서 유의미. 즉 다른 조건이 동일하더라도 주5일 근무제 사업장에서 장시간 근로 확률은 그렇지 않은 사업장의 1/5(18.2%)밖에 안 됨. 주5일 근무제가 확대되면 그만큼 실 근로시간이 단축되고 장시간 근로가 줄어들 것임.

- 다른 조건을 통제한 상태에서 실 근로시간 결정요인을 회귀분석 한 결과, 근로시간의 임금 탄력성은 -0.145^{***} 로 추정됨. 이는 다른 조건이 동일할 때 임금이 10% 인상되면 실 근로시간이 1.45% 단축됨을 의미함.
- 다른 조건을 통제한 상태에서 장시간 근로 결정요인을 다항 로짓분석 한 결과, 로그 시간당 임금의 계수 값은 -1.629^{***} 로 0.1% 유의수준에서 유의미함. 이는 임금수준이 높을수록 장시간 근로를 벗어날 확률이 높으며, 저임금과 장시간 근로는 동전의 양면임을 말해줌.

2. 주5일 근무제 적용률

- 2010년 3월 현재 20인 이상 사업 또는 사업장은 근로기준법에 따라 주5일(40시간) 근무제가 적용됨. 주5일 근무제를 적용받는 사람은 전체 노동자 1,662만 명 가운데 813만 명(48.9%)임.
- 300인 이상 사업장은 주5일 근무제 적용률이 사실상 100%임. 100인 이상 300인 미만 사업장은 80.7%, 30인 이상 100인 미만 사업장은 58.2%로, 규모가 작을수록 적용률이 낮아짐. 이에 따라 30인 이상 사업장에서 주5일 근무제 적용률은 75.0%로, 519만 명은 적용받고 173만 명은 적용받지 못하고 있음.
- 김유선(2008)은 “법정 근로시간을 10% 단축하면 실 근로시간이 8% 감소하고, 실 근로시간이 10% 감소하면 일자리가 8.5% 증가한다”고 추정함 바 있음. 이는 주5일(40시간) 근무제를 도입하면 일자리가 6.8% 늘어난다는 얘기임.
- 만약 근로기준법대로 30인 이상 사업장 노동자들 모두가 주5일(40시간) 근무제를 적용받는다면, 주5일 근무제 적용자(적용률)는 986만 명(59.4%)으로 늘고, 일자리는 새로이 11만 8천개(173만 명×6.8%) 늘어날 것으로 추정됨.

<표11> 주5일 근무제 적용 현황(2010년 3월 현재, 단위: 천명,%)

	노동자	주5일 근무제		
		적용	미적용	적용률
전규모	16,616	8,127	8,489	48.9
300인 이상	1,928	1,920	8	99.6
100-299인	1,618	1,306	312	80.7
30-99인	3,381	1,968	1,413	58.2
10-29인	3,729	1,758	1,971	47.1
5-9인	2,782	702	2,080	25.2
1-4인	3,180	475	2,705	14.9
30인이상	6,927	5,194	1,733	75.0
30인미만	9,691	2,935	6,756	30.3

자료: 통계청 경제활동인구조사 부가조사(2010년 3월)

- 주5일 근무제 적용률은 사업장 규모뿐만 아니라 산업별로도 뚜렷한 차이를 보이고 있음. 공무원(95.9%)과 금융보험업(94.0%)은 사실상 100% 적용받는데 비해, 교육서비스업(35.8%)과 도소매업(30.5%), 숙박음식점업(9.0%)은 적용률이 매우 낮음.
- 교육서비스업에서 주5일 근무제 적용률이 낮은 것은 주5일 수업제를 전면 실시하지 않고 있기 때문임. ‘늦어도 2011년 말까지는 상시 20명 미만 사업장,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기관까지 주5일(40시간) 근무제를 시행한다’는 근로기준법 조항을 고려할 때, 교육과학기술부는 2011년 하반기부터는 주5일 수업제를 전면 실시한다는 방침 아래 준비에 착수해야 할 것임.

<표12> 주요 산업의 규모별 주5일 근무제 적용률(2010년 3월, 단위:%)

	1-4인	5-9인	10-29인	30-99인	100-299인	300인 이상	전체
공공행정국방사회보장행정	91.6	89.5	93.9	91.4	96.5	99.9	95.9
금융보험업	88.1	91.1	94.8	91.0	98.7	100.0	94.0
제조업	12.3	18.6	40.5	70.7	88.3	99.8	61.0
운수업	24.0	32.9	48.6	41.4	57.2	99.2	51.4
보건업사회복지서비스업	20.8	31.3	40.7	61.5	67.4	97.1	50.4
교육서비스업	38.0	36.4	38.3	17.9	52.1	100.0	35.8
도소매업	10.7	23.5	42.0	58.2	65.9	98.6	30.5
숙박음식점업	1.2	2.3	16.0	38.4	75.0	100.0	9.0
전산업	14.9	25.2	47.1	58.2	80.7	99.6	48.9

자료: 통계청 경제활동인구조사 부가조사(2010년 3월)

o 노동부는 ‘2011년 7월부터 5인 이상 20인 미만 사업장까지 주5일(40시간) 근무제 적용 확대’를 입법예고했음.

- 5인 미만 사업장 근로기준법 적용을 언제까지 제외할 것인지 재검토가 필요함.

o 주5일 근무제 적용률을 높이려면 산업별 규모별로 그 실태를 점검하고 세부적인 보완책을 마련함과 동시에, 근로감독 행정을 강화해야 함.

<참고> 근로기준법 제50조(근로시간) ① 1주 간의 근로시간은 휴게시간을 제외하고 40시간을 초과할 수 없다. ② 1일의 근로시간은 휴게시간을 제외하고 8시간을 초과할 수 없다.

제53조(연장근로의 제한) ① 당사자 간에 합의하면 1주 간에 12시간을 한도로 제50조의 근로시간을 연장할 수 있다.

제110조(벌칙)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

3. 장시간 근로

o 근로기준법 제53조는 주당 연장근로 한도를 12시간으로 제한하고 있음. 따라서 주5일(40시간) 근무제에서 주52시간을 초과하는 장시간 근로는 불법임.

- 경제활동인구조사 부가조사(2010년 3월)에서 주당 근로시간이 52시간을 초과하는 사람은 267만 명(16.1%)이고, 이들의 주당 근로시간 평균은 61.7시간임.

- 만약 이들이 근로기준법대로 연장근로한도 12시간을 지켜 매주 52시간만(?) 일한다면, 새로운 일자리를 50만개 만들 수 있음. 즉 법대로 주 52시간을 초과하는 연장근로를 제한하면 일자리 50만개가 가능함(268만 명 \times 9.7시간 \div 52시간 = 49.9만 명).

o 그럼에도 주52시간을 초과하는 장시간 근로가 광범위하게 이루어지는 것은, 근로감독행정을 담당하고 있는 노동부가 탈법적인 장시간 근로를 단속하기는커녕, 행정해석 등을 통해 오히려 장시간 근로를 부추기고 있기 때문임.

- 노동부는 행정해석(근기 68207-2855, 2000.9.19)을 통해 휴일근로는 연장근로 한도에 포함되지 않는다고 하며, 탈법적인 장시간 근로를 합법화시켜 주고 있음. 행정해석대로라면 매주 60시간(소정근로 40시간, 연장근로 12시간, 휴일근로 8시간)의 장시간 근로가 합법적으로 가능하다는 얘기가 됨.

o 노동부는 황당한 행정해석을 폐기하고 근로감독 행정을 강화함으로써 장시간 근로 근절에 나서야 할 것임.

<참고>노동부 행정해석 (근기 68207-2855, 2000.9.19)

근로기준법 제49조의 규정에 의한 1주 44시간, 1일 8시간의 근로시간 한도는 원칙적으로 1주간 또는 1일의 법정기준 근로시간을 의미함. 법 제52조의 '1주간에 12시간을 한도로 제49조의 근로시간을 연장할 수 있다'는 규정에서의 연장근로시간에는 휴일근로시간이 포함되지 아니함. 따라서 1주 6일 근무 체제하에서 일요일을 근로기준법 제54조의 휴일로 규정하였고 월요일부터 토요일까지 10시간 연장근로를 하고 주휴일인 일요일에 9시간 근로를 하였다고 하여 근로기준법 위반문제는 발생하지 않음. 근로기준법의 규정에 의한 1주간은 7일을 의미함. 7일의 의미는 주휴일부터 기산 하여 7일간(일~토)으로 하거나 또는 일정한 요일을 시기로 하여 7일간(수~화)

으로 하는 등 사업장 형편에 맞게 정하여 운용할 수 있음.

<참고문헌>

- 김유선(2000a), "법정근로시간 단축의 효과분석", 노사정위원회 연구용역보고서.(www.ksli.org)
- 김유선(2000b), "법정근로시간 단축의 실근로시간 단축효과", 『분기별 노동동향분석』 13(3), 한국노동연구원.
- 김유선(2008), "법정 근로시간 단축이 실근로시간, 고용, 실질임금에 미친 영향", 『산업노동연구』 14권2호.
- 남성일(2002), "법정근로시간 단축의 거시경제 효과분석", 『노동경제논집』 25(2), 한국노동경제학회.
- 백용기·오완근(2003), "법정근로시간 단축에 따른 생산효과의 단기분석", 『경제학연구』 50(4): 69-100.
- 신관호·신동균·유경준(2002), "법정근로시간 단축의 경제적 효과", 『노동경제논집』 25(3), 노동경제학회.
- 안주엽·이규용(2001), "법정근로시간 단축의 노동시장 효과: 제조업을 중심으로", 『분기별 노동동향분석』 14(1), 한국노동연구원.
- Lee, McCann and Messenger(2007), *Working Time Around the World: Trends in working hours, laws, and policies in a global comparative perspective*, ILO

<부표1> OECD 회원국 노동시간 국제비교(임금노동자, 단위: 연간노동시간)

	2000	2005	2006	2007	2008	2009	순위
호주							
오스트리아	1,509	1,488	1,480	1,487	1,483	1,436	3
벨기에	1,422	1,450	1,454	1,454	1,469	1,453	4
캐나다	1,756	1,735	1,734	1,731	1,725	1,699	12
체코	2,018	1,923	1,922	1,914	1,923	1,879	19
덴마크	1,549	1,548	1,556	1,547	1,549	1,547	7
핀란드	1,638	1,605	1,600	1,594	1,610	1,555	8
프랑스	1,491	1,466	1,447	1,468	1,475	1,468	5
독일	1,387	1,354	1,352	1,354	1,353	1,309	2
그리스	1,818	1,811	1,796	1,782	1,803	1,777	18
헝가리	1,795	1,803	1,799	1,778	1,786	1,749	16
아이슬란드	1,820	1,816	1,813	1,822	1,812	1,717	14
아일랜드	1,596	1,562	1,560	1,544	1,522	1,470	6
이탈리아							
일본	1,853	1,802	1,811	1,808	1,792	1,733	15
한국				2,090	2,057	2,074	22
룩셈부르크	1,596	1,524	1,555	1,513	1,544	1,559	9
멕시코	1,936	1,970	1,944	1,933	1,960	1,915	20
네덜란드	1,331	1,301	1,300	1,297	1,301	1,288	1
뉴질랜드	1,769	1,775	1,760	1,744	1,724	1,709	13
노르웨이							
폴란드	1,963	1,970	1,958	1,953	1,940	1,938	21
포르투갈	1,670	1,680	1,694	1,674	1,686	1,664	11
슬로바키아							
스페인	1,687	1,634	1,622	1,603	1,613	1,615	10
스웨덴							
스위스							
터키							
영국	1,690	1,658	1,652	1,660	1,638		
미국	1,835	1,801	1,802	1,799	1,797	1,776	17
단순평균	1,688	1,667	1,664	1,676	1,677	1,651	
최대값	2,018	1,970	1,958	2,090	2,057	2,074	
최소값	1,331	1,301	1,300	1,297	1,301	1,288	
응답국가	22	22	22	23	23	22	

자료: OECD

<부표2> OECD 회원국 노동시간 국제비교(취업자, 단위: 연간노동시간)

	2000	2005	2006	2007	2008	2009	순위
호주	1,772	1,726	1,719	1,713	1,718	1,690	14
오스트리아	1,658	1,652	1,644	1,630	1,631	1,621	10
벨기에	1,545	1,565	1,566	1,560	1,568	1,550	5
캐나다	1,768	1,738	1,738	1,736	1,727	1,699	16
체코	2,092	2,002	1,997	1,985	1,992	1,942	24
덴마크	1,581	1,579	1,586	1,571	1,570	1,563	7
핀란드	1,751	1,716	1,709	1,706	1,704	1,652	12
프랑스	1,591	1,557	1,536	1,556	1,560	1,554	6
독일	1,473	1,434	1,430	1,431	1,430	1,390	2
그리스	2,121	2,086	2,148	2,116	2,116	2,119	27
헝가리	2,057	1,994	1,989	1,986	1,986	1,989	26
아이슬란드	1,885	1,794	1,795	1,807	1,807	1,716	18
아일랜드	1,719	1,654	1,642	1,631	1,601	1,549	4
이탈리아	1,861	1,819	1,815	1,816	1,807	1,773	22
일본	1,821	1,775	1,784	1,785	1,772	1,714	17
한국	2,520	2,364	2,357	2,316	2,256		28
룩셈부르크	1,662	1,570	1,580	1,515	1,555	1,601	8
멕시코	1,888	1,909	1,883	1,871	1,893	1,857	23
네덜란드	1,374	1,375	1,389	1,390	1,389	1,378	1
뉴질랜드	1,830	1,810	1,787	1,763	1,746	1,729	20
노르웨이	1,455	1,420	1,414	1,419	1,423	1,407	3
폴란드	1,988	1,994	1,985	1,976	1,969	1,966	25
포르투갈	1,765	1,752	1,757	1,727	1,745	1,719	19
슬로바키아	1,815	1,768	1,755	1,753	1,769	1,693	15
스페인	1,731	1,668	1,656	1,636	1,647	1,654	13
스웨덴	1,642	1,605	1,599	1,615	1,625	1,610	9
스위스	1,688	1,667	1,652	1,643	1,640		
터키	1,937						
영국	1,712	1,676	1,671	1,673	1,652	1,646	11
미국	1,836	1,800	1,800	1,798	1,792	1,768	21
단순평균	1,785	1,740	1,737	1,728	1,727	1,687	
최대값	2,520	2,364	2,357	2,316	2,256	2,119	
최소값	1,374	1,375	1,389	1,390	1,389	1,378	
응답국가	30	29	29	29	29	27	

자료: OECD

<부표3> 사업장 규모별 실 근로시간(2010년 3월 현재)

		30인 이상 사업체				30인 미만 사업체			
		노동자수(천명)			주5일제 시행률 (%)	노동자수(천명)			주5일제 시행률 (%)
		전체	주5일제 미시행	주5일제 시행		전체	주5일제 미시행	주5일제 시행	
전체		6,926	1,733	5,193	75.0	9,690	6,756	2,934	30.3
성별	남자	4,432	930	3,502	79.0	5,109	3,497	1,612	31.6
	여자	2,494	803	1,691	67.8	4,581	3,259	1,322	28.9
혼인	미혼	1,791	412	1,379	77.0	2,781	1,917	864	31.1
	기혼	5,135	1,321	3,814	74.3	6,909	4,839	2,070	30.0
성별 혼인	미혼남자	986	216	770	78.1	1,449	1,033	416	28.7
	기혼남자	3,446	714	2,732	79.3	3,661	2,464	1,197	32.7
	미혼여자	805	196	609	75.7	1,332	884	448	33.6
	기혼여자	1,689	607	1,082	64.1	3,249	2,375	874	26.9
가구주 관계	가구주	4,227	935	3,292	77.9	5,035	3,481	1,554	30.9
	배우자	1,256	457	799	63.6	2,180	1,559	621	28.5
	기타가구원	1,444	342	1,102	76.3	2,475	1,716	759	30.7
연령 계층	25세미만	359	103	256	71.3	838	651	187	22.3
	25-34세	2,203	457	1,746	79.3	2,472	1,525	947	38.3
	35-44세	2,109	471	1,638	77.7	2,616	1,787	829	31.7
	45-54세	1,612	449	1,163	72.1	2,238	1,630	608	27.2
	55세이상	642	253	389	60.6	1,526	1,163	363	23.8
학력	중졸이하	566	221	345	61.0	1,989	1,643	346	17.4
	고졸	2,127	618	1,509	70.9	3,841	2,938	903	23.5
	전문대졸	1,069	229	840	78.6	1,366	819	547	40.0
	대졸이상	3,003	620	2,383	79.4	2,048	997	1,051	51.3
	재학휴학중	161	45	116	72.0	448	360	88	19.6
산업	제조업	1,908	295	1,613	84.5	1,412	999	413	29.2
	기타재화생산	384	136	248	64.6	1,267	1,081	186	14.7
	생산자서비스업	1,186	156	1,030	86.8	1,570	706	864	55.0
	유통서비스업	1,201	344	857	71.4	2,072	1,462	610	29.4
	개인서비스업	294	116	178	60.5	1,868	1,715	153	8.2
	사회서비스업	1,952	685	1,267	64.9	1,502	793	709	47.2
직업	관리전문직	2,123	595	1,528	72.0	1,915	1,093	822	42.9
	사무직	1,892	218	1,674	88.5	1,517	600	917	60.4
	서비스판매직	780	268	512	65.6	2,185	1,776	409	18.7
	생산직	1,481	421	1,060	71.6	1,964	1,594	370	18.8
	단순노무직	650	231	419	64.5	2,109	1,694	415	19.7
종사자 규모	1-4인					3,180	2,705	475	14.9
	5-9인					2,782	2,080	702	25.2
	10-29인					3,729	1,971	1,758	47.1
	30-99인	3,381	1,413	1,968	58.2				
	100-299인	1,618	312	1,306	80.7				
	300인 이상	1,928	8	1,920	99.6				
노조유 무가입	무노조	3,711	1,046	2,665	71.8	8,797	6,516	2,281	25.9
	유노조비조합원	1,611	452	1,159	71.9	512	151	361	70.5
	유노조조합원	1,604	235	1,369	85.3	382	90	292	76.4
비정 규직	정규직	5,028	993	4,035	80.3	3,305	1,656	1,649	49.9
	비정규직	1,898	740	1,158	61.0	6,386	5,100	1,286	20.1

종사상 지위	상용	5,790	1,216	4,574	79.0	4,136	2,062	2,074	50.1
	임시	1,004	418	586	58.4	3,972	3,142	830	20.9
	일용	132	99	33	25.0	1,583	1,552	31	2.0
임금 계층	저임금계층	789	408	381	48.3	3,622	3,097	525	14.5
	중간임금계층	2,854	827	2,027	71.0	4,647	3,187	1,460	31.4
	고임금계층	3,283	498	2,785	84.8	1,421	472	949	66.8

자료: 통계청 경제활동인구조사 부가조사(2010년 3월)